

## 광명시 주민투표 조례

제정	2004. 6. 25	조례 제1343호
개정	2008. 6. 16	조례 제1588호(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2009. 6. 5	조례 제1668호
일부개정	2010. 3. 26	조례 제1714호
일부개정	2016. 1. 1	조례 제2149호(주민등록번호 처리제한을 위한 광명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18. 7. 31	조례 제2372호(조례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	2022. 3. 2	조례 제2840호(「지방자치법」 인용조항 정비를 위한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27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2022. 10. 17	조례 제2889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6. 16>

제2조(시의 책무)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광명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09. 6. 5>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광명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은 주민투표권이 있다. <개정 2009. 6. 5, 2022. 10. 17>

제4조 삭제 <2022. 10. 17>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2분

의 1이상으로 한다.

제6조(서명요청방식) ①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을 덧붙여야 한다.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는 날부터 90일이내로 한다.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6. 5, 2016. 1. 1, 2022. 10. 17>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 또는 체류지
4. 서명 연월일

② 청구인서명부는 동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22. 10. 17>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에

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체류지,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09. 6. 5, 2016. 1. 1, 2022. 10. 17〉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17〉

② 시장은 생년월일을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6. 5, 2018. 7. 31, 2022. 10. 17〉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④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보정기간은 10일이 내로 한다.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법 제1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광명시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 광명시 소속 관계 공무원
2. 광명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변호사, 교수 등 주민투표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전문개정 2022. 10. 17]

제13조(심의회 위촉위원의 임기) 심의회는 해당 심의가 종료하는 때까지를 그 존속기간으로, 위원은 해당 기간을 임기로 한다.

[본조신설 2022. 10. 17]

제14조(심의회의 운영 등) ① 법 제1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의 의

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10. 17]

제15조(심의회 간사) ①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주민투표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본조신설 2022. 10. 17]

제16조(심의회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10. 17]

제17조(처리기간) ① 시장은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신청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과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내에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 7. 31>

[중전 제13조에서 이동 2022. 10. 17]

제18조(투표운동의 제한) ①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 연설회와 대담·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에 있어서 휴대용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22. 10. 17]

제19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①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②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③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④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

⑤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다.

⑥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다.

[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22. 10. 17]

제20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와 이 조례 제10조제4항 및 법 제13조제2항, 법 제26조제1항, 같은 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 의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 <개정 2022. 10. 17>

[종전 제16조에서 이동 2022. 10. 17]

## 부칙

이 조례는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6. 16 조례 제1588호,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명시 주민투표 조례

부칙 <2009. 6. 5 조례 제16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3. 26 조례 제171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만료 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6. 1. 1 조례 제2149호, 주민등록번호 처리제한을 위한 광명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광명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및 제9조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부칙 <2018. 7. 31 조례 제2372호, 조례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22. 3. 2 조례 제2840호, 「지방자치법」 인용조항 정비를  
위한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27개 조례 일부  
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0. 17 조례 제28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  
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4조, 제12조부터 제16조, 제20조의 개정규정 : 2022년 10월 27일
2. 제8조제1항 단서(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10조제1항  
(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 : 2023년 4월 27일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2. 10. 17>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주민투표 청구요지			
서명요청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지역 :		
위 사람은 주민투표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 다.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 20px 0;">                     년    월    일                 </div>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 0;"> <b>광명시장</b>    (인)                 </div>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 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 을 요약하여 기재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2. 10. 17>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p style="text-align: center;">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주민투표에관한참고 자치법규안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10px;">광명시장      (인)</p>				
<p>※ 작성요령</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li> <li>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li> <li>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li> <li>4.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li> </ol>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2. 10. 17>

( ) 주민투표의 청구	
<b>청 구 인 서 명 부</b>	
서명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서명주민수 :	명
광명시 및 동(○책중 ○권)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수 입 자	(서명 또는 날인)

※ 작성요령

1. ( )에는 주민투표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주민투표청구대상을 기재하며, 서명주민수가 많은 경우에는 책과 권으로 분철하고, 수입자는 책과 권별로 서명을 요청한 수입자를 기재한다.
2. 서명을 요청한 수입자가 다수인 경우, 각 수입자를 모두 기재한다.
3. 광명시 및 동(○책중 ○권) 란에는 통·리·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민투표가 실시되는 통·리·반으로 작성한다.

### 청 구 인 서 명 부

번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서 명 또는 날 인	서명 일자	비고

※ 작성요령

1. 번호란에는 서명순서에 의하여 일련번호를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인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거나 날인
5.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하거나,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붉은선으로 두 줄을 그어 삭제하고, 비고란에 그 삭제일자를 기재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2. 10. 17>

주민투표청구서			
청구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p style="text-align: center;">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민투표를 청구 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p> <p>광명시장 귀하</p>			
<p>※ 첨부서류 : 관련자료</p> <p>※ 작성요령</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li> <li>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li> <li>3.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li> </ol>			

